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097

발의연월일: 2021. 8. 18.

발 의 자:백혜련·김남국·김승남

김의겸 • 김한정 • 남인순

서동용 · 오영환 · 이형석

임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납세지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며, 그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역시 주소지임.

그런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, 부동산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와 조세수입 주체의 불균형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 음.

이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지방소득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89조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제1항제1호 중 "납세지"를 "납세지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각각의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.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에 관한 적용 례) 제8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9조(납세지 등) ① 지방소득세	제89조(납세지 등) ①
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	
다.	
1. 개인지방소득세: 「지방세기	1
본법」 제34조에 따른 납세의	
무 성립 당시의 「소득세법」	
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<u>납세</u>	<u>납세</u>
<u>지</u>	지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94
	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
	도소득의 경우에는 각각의 토
	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 소재
	지를 납세지로 한다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